미연방 국토안보부(DHS)
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통고장(TNC Notice)

고용인의성, 이름	고용인의사회보장번호마지막 4 자리
고용인의 A-번호	고용인의문서번호(들)
잠정비확인날짜	케이스확인번호
본 TNC 통고장의이유:	☐ ☐ **사진이일치하지않아DHS 잠정비확인이라는결과가나왔습니다.** 고용자격확인서인양식I-9을위해본고용인이제공한문서에있는사진이미연방국토안보부기록에있는사진과일치하지않습니다.

고용주를위한지시사항

중요사항
고용인이본 TNC 통고장 2 페이지에서명하고날짜를기입해야합니다.

1. 고용인과본TNC통고장을가능한한빨리(사적으로) 검토하십시오.
2. 본TNC 통고장상단에나와있는이름, 사회보장번호, 미국여권번호, A-번호, I-94 번호그리고/혹은운전면허증번호혹은주신분증번호가올바른지확인하십시오.본정보가옳지않다면, E-Verify 에서케이스를닫고올바른정보를가지고새케이스를작성하셔야합니다.
   중요: 만약고용인이글을읽지못하면,본TNC 통고장을고용인에게읽어주셔야합니다. 고용인이영어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 스페인어, 중국어, 하이티-크리올,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타갈로그, 혹은베트남어를한다면, '필수리소스보기(View Essential Resources)'에나와있는이들언어중하나로된TNC통고장을고용인에게제공해야합니다.
3. DHS TNC 에이의를제기할것인지여부를 2 페이지에표시하라고고용인에게요청하십시오.
4. 고용인에게본 TNC 통고장 2 페이지에서명하고날짜를기입하라고요청한후아래제공된란에서명하고날짜를기입하십시오.
5. 서명되고영어로된본 TNC 통고장을고용인에게한부주고고용인의양식 I-9 에한부를첨부하십시오.
6. E-Verify 에서고용인에게 TNC 를통고했다고표시하고나서 '계속(Continue)'을클릭하십시오.
7. 고용인의결정에따라본케이스를의뢰하던지혹은닫을것인지에대해서는 E-Verify 에나온지시사항을따르십시오.

주의:고용인이잠정비확인에이의제기를하지않기로선택하면, 그를해고시키고 E-Verify 에서본케이스를닫을수있습니다.

나는본고용인이본 '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DHS통고장'을받았으며본고용인이본TNC통고장 2페이지에나와있는대로결정을했다는것을증명합니다. 나는고용인이본문서를읽고서명했다는것을증명합니다. 내가아는바DHS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할것인지아닌지에대한고용인의결정은고용인의자유의지에의한것이며고용인이DHS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기로한결정에관하여고용주로부터어떤강요나압력을받지않았다는것을증명합니다. 나는본TNC통고장의상단에이름이나온고용인이본문서 2페이지에서명한사람이라는것을증명합니다

고용주의이름
날짜

고용인을위한지시사항

본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통고장(TNC 통고장)을받으신이유

귀하의고용주가 E-Verify 에참여하는데, 이는미연방국토안보부와사회보장국(SSA)에의해관리되는프로그램입니다. E-Verify 는고용자격확인서인양식 I-9 에귀하께서제공하신정보를정부의기록과대조하여귀하께서미국에서일하도록허가를받았는지확인합니다.귀하께서 고용허가문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영주권혹은미국여권또는여권카드를제시하셨다면 E-Verify 를이용해고용주는귀하의문서에있는사진이 DHS 기록에있는사진과일치하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양식 I-9 에서 E-Verify 로입력된정보가 DHS 의기록과일치하지않는다고 E-Verify 가지적하였기때문에귀하께서본 TNC 통고장을받으셨습니다. 이는 DHS 잠정비확인혹은 TNC 로알려져있습니다.
귀하께서고용주에게잘못된정보를주었다거나, 귀하께서미국에서일할허가가없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DHS 잠정비확인은다음과같은경우에일어날수있습니다:

- 귀하의이름, A-번호그리고/혹은 I-94 번호가 DHS 기록에잘못기록되어있습니다.
- 귀하의미국여권, 여권카드, 운전면허증혹은주신분증정보가확인되지못했습니다.
- 귀하의정보가 E-Verify 에서검사되었을당시귀하의정보가 DHS 기록에갱신되어있지않았습니다.
- 귀하의시민권이나이민지위가변경되었습니다.
- 귀하의 DHS 기록에다른종류의오류가있습니다.
- E-Verify 에서귀하의사회보장번호를더이상사용할수없도록귀하가 DHS JobLock 프로그램을통해서잠가두셨습니다.
- 귀하의고용주가 E-Verify 에귀하의정보를올바르게제출하지않았습니다.

중요사항
본 TNC 통고장은귀하께서일하시도록허가받지않았다거나양식 I-9 을위해귀하께서제시한문서(들)에올바르지않은 정보가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DHS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기로선택하시면, DHS 에연락하셔야합니다. DHS 는그기록을검토하여귀하께서미국내에서일하시도록허용되는지결정하게됩니다. 본 DHS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결정하시면, 귀하의고용주가귀하를해고할수있습니다.

귀하가하셔야할일

본 TNC 통고장의첫페이지에나와있는귀하의이름, 사회보장번호, 미국여권번호, A-번호, I-94 번호그리고/혹은운전면허증번호혹은주신분증번호가올바른지확인하십시오.
올바르지않은정보가있을경우즉시고용주에게말씀하십시오.귀하의정보가올바르다면, DHS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할것인지결정하시고본결정을고용주에게알려야합니다.

DHS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시면**(조치를취함),DHS에연락하셔야합니다. 귀하의고용주가E-Verify 를통해귀하의케이스를DHS에보내고귀하께의뢰편지를줄것입니다.
의뢰편지에는DHS에어떻게연락하고어떤정보혹은문서가필요한지설명이있을것입니다.귀하의고용주가E-Verify 에서귀하의케이스를의뢰하는날짜로부터연방정부근무일기준으로 8 일안에DHS에연락해야합니다.

귀하께서 TNC 에이의를제기하기로결정한것을근거로귀하의고용주가귀하께부정적인조치를취하거나해고시킬수없다는것을아시는것이중요합니다. 본 TNC 통고장다음페이지에귀하의권리가개략적으로나와있습니다.

귀하께서 DHS 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지않으시면**(조치를취하지않음),
TNC 를해결할수있는기회를포기하는선택을하시는겁니다.
귀하의케이스가자동적으로최종비확인판정이되고그의미는귀하의고용주가귀하를해고할수있다는것입니다.

중요사항
귀하의권리를아십시오: 귀하의법적권리에대한중요한정보가나와있는다음페이지를읽으십시오.

나는선택한다: (하나만체크)

__DHS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할것**을선택한다.나는DHS의뢰편지에나와있는날짜로부터연방정부근무일기준으로 8일안에미연방국토안보부에연락해야함을이해한다.

_DHS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안할것**을선택한다.나는DHS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할기회를포기하기로 선택한다. 나는고용주가나를해고할수있다는것을이해한다.

고용인의서명		날짜

무엇을해야하는지에대한질문이있을경우, E-Verify에 888-897-7781 번(청각장애인용: 877-875-6028)으로연락하거나E-Verify @dhs.gov로이메일하십시오. 이민관련부당고용관행에대한질문이있을경우,이민관련부당고용관행에대한특별변호사사무실(Office of CounselforImmigration-RelatedUnfairEmploymentPractices)에 800-255-7688 번 (청각장애인용: 1-800-237-2515) 으로연락하십시오.

귀하의권리를아십시오

- 고용주는 E-Verify 를선별적으로사용하거나직업지원자를사전심사하는데사용할수없습니다. E-Verify 는출신국가혹은시민권혹은이민지위와무관하게모든신규고용인들에대해사용되어야합니다.
- 고용주가현재연방계약서에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연방취득규정) E-Verify 조항을구비한연방계약업자가아닌이상기존고용인의자격을확인하기위해 E-Verify 를사용할수없습니다.
- 고용주들은영어와스페인어로된 'E-Verify 참여통고서' 와 '일할권리포스터(들)'을명확하게붙여보여주도록되어있습니다.
- 고용주는잠정비확인(TNC)판정을받는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보내는잠정비확인통고장' 한부를주어야합니다. TNC 통고장에는어떻게 TNC 에이의를제기하는지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 고용인의 TNC 에이의를제기하기로한결정에근거해서혹은고용인의케이스가아직미연방국토안보부(DHS)혹은사회보장국(SSA)에서미결중이라고해서고용주가고용인에게불리한조치를취할수없는데이에는해고, 정직, 급여및직업훈련보류, 시작날짜연기혹은기타고용을제한하는조치들이포함됩니다.
- 만약고용인이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기로결정할경우, 고용주는고용인에게 DHS 혹은 SSA 에로의의뢰편지를주어야합니다. 의뢰편지에는고용인을위한지시사항및부서연락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 고용주는고용인이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를제기하기위해서 SSA 일선사무국을방문하거나 DHS 에연락하도록 E-Verify 에서케이스가의뢰된날짜로부터연방정부근무일기준으로 8 일을주어야합니다.
- 고용주는최종비확인판정을받은후에만, 혹은고용인이잠정비확인판정에이의제기하지않기로결정한후에고용인을해고할수있습니다.
- 고용주는고용허가가만료된기존고용인들을재확인하기위해서 E-Verify 를사용할수없습니다. 대신고용주는고용자격확인서인양식 I-9 섹션 3 을작성하거나새양식 I-9 을작성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관행및프로그램규칙을포함하여E-Verify에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E-Verify 웹사이트www.dhs.gov/E-Verify를방문해주십시오.

위반사항을보고하십시오

귀하께서귀하의고용주가E-Verify규칙을위반했거나귀하를차별적으로혹은부당하게대우했다고믿으시는경우, 보고할것을권고합니다. 고용주부당사용, 개인정보보호위반사항및일반적E-Verify불만사항을보고하기위해서는, E-Verify 고용인핫라인에 888-897-7781 번으로 (청각장애인용TTY: 877-875-6028) 연락하시거나E-Verify@dhs.gov로이메일하십시오.

시민권, 이민지위, 혹은출신국가에근거한고용차별, 혹은기타E-Verify부당사용을보고하기위해서는법무부, 공민권국, 이민관련부당고용관행에대한특별변호사사무실(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ImmigrationRelated Unfair Employment Practices)에 800-255-7688 (청각장애인용: 800-237-2515)번으로연락하십시오. 더자세한정보를보시려면, 특별변호사사무실웹사이트인www.justice.gov/crt/osc를방문하십시오.